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76
----------	-------

발의연월일 : 2026. 6. 16.

발 의 자 : 이훈기 · 최민희 · 김남근  
박지원 · 김 윤 · 전진숙  
황운하 · 김문수 · 민병덕  
김현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상장기업의 실적 개선 등으로 국내 증시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은 일본, 대만 등 산업구조가 유사한 경쟁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어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PBR은 기업가치 판단의 대표 지표이나, 단순 수치만으로는 기업가치 평가에 한계가 존재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기업의 저평가 원인 및 개선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2개연도 이상 계속하여 PBR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해 자본구조와 자금조달비용 등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기재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리안 디스카운트

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의2를 제161조의3으로 하고, 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2(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 대비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이 2개 연도 이상 계속하여 100분의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이하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라 한다)를 정기총회 2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본구조(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대비 부채총액을 말한다)의 효율성 진단 및 개선 계획
2. 자금 조달 비용의 효율성 진단 및 개선 계획
3. 사업구조 개선계획

4. 해당 사업연도의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

5. 직전 사업연도 계획 대비 이행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163조의 제목 중 “사업보고서등”을 “사업보고서등과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65조의9 중 “제163조”를 “제163조제1항”으로 한다.

제446조제19호의8 중 “제161조의2”를 “제161조의3”으로 한다.

제449조제1항에 제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의2. 제1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의2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61조의2(기업가치 제고계획서</u>  <u>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은</u>  <u>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 대비</u>  <u>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u>  <u>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이 2개</u>  <u>연도 이상 계속하여 100분의 1</u>  <u>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u>  <u>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u>  <u>(이하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라</u>  <u>한다)를 정기총회 2주 전까지</u>  <u>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u>  <u>여야 한다. 다만, 주권이 증권</u>  <u>시장에 상장된 지 3년이 지나</u>  <u>지 아니한 경우 또는 파산, 그</u>  <u>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업가치</u>  <u>제고계획서의 제출이 사실상</u>  <u>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u>  <u>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경우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u>  <u>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1. <u>자본구조(재무상태표상 자산</u>  <u>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u></p>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생략)

제163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생략)

<신 설>

대비 부채총액을 말한다)의 효율성 진단 및 개선 계획

2. 자금 조달 비용의 효율성 진단 및 개선 계획

3. 사업구조 개선계획

4. 해당 사업연도의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

5. 직전 사업연도 계획 대비 이행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161조의3(자료요구권 등) (현행 제161조의2와 같음)

제163조(사업보고서등과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 공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9의7. (생략)
- 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0. ~ 64.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  
-----  
-----  
-----  
-----  
-----

-----제163조  
제1항-----  
-----  
-----  
-----  
-----

제446조(벌칙) -----  
-----  
-----  
-----  
-----.

1. ~ 19의7. (현행과 같음)
- 19의8. -----  
-----제161조의3-----  
-----  
-----

20. ~ 64.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  
-----  
-----

<p>부과한다.</p> <p>1. ~ 38. (생략)</p> <p><u>&lt;신설&gt;</u></p> <p>39. ~ 49. (생략)</p> <p>② ~ ④ (생략)</p>	<p>-----.</p> <p>1. ~ 38. (현행과 같음)</p> <p><u>38의2. 제161조의2제1항을 위반</u> <u>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u> <u>제출하지 아니한 자</u></p> <p>39. ~ 49.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